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환경부 공고 제2006-66호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을 수질등급 달성목표에 따라 청정가·나·특례지역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으나, 청정지역에서 구리·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이 먹는물 수질 기준보다 높아 과도한 규제라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이를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조정하여 규제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수질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수질원격감시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부착대상 사업장의 규모 및 측정기의 종류 등을 추가하여 정하고, 그 밖의 측정기기 부착 시기 등 절차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청정지역의 구리, 수은의 배출허용기준을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조정함.

나. 현행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한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의 규모, 측정기기의 종류 및 부착방법 등을 환경부령으로 규정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도입을 위하여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및 측정기기의 종류 등을 추가함.

(1) 측정기기의 종류는 기존의 적산전력계 및 적산 유량계 이외에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pH, BOD, COD, SS, T-N, T-P), 자료수집기(D/L), 자동시료채취기를 추가

(2) 수질연속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1일 처리능력이 200m³ 이상인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1종 내지 3종 사업장으로 규정

다. 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함.

라. 측정기기로 측정·기록된 오염도 검사자료를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확인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 오염도 검사자료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에 연결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활용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별표5 제2호 폐놀류 등 오염물질의 지역구분중 “청정”란의 구리(동) 함유량중 “0.5mg/L 이하”를 “1mg/L” 이하로 하고, 동란의 수은함유량 중 “불검출”을 “0.001mg/L 이하”로 한다.

제27조제1항중 “법 제15조제4항”을 “법 제38조제4항”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를 “별표 7과 같다”로 하고, 동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 또는 방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7조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

가 측정기기로 측정·기록된 오염도 검사자료를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확인 또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오염도 검사자료는 측정기기를 수질원격감시체계관제센터에 연결한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활용한다. 다만, 측정기기의 이상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자료가 측정·기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부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환경부고시 제1999-135('99. 9. 2)에 따라 이미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한 사업장은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적산전력계 및 적산유량계를 부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별표 7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수질오염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법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포함한다)에 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사업장 구분	폐수배출량 또는 처리능력	측정기기 부착기한
1~2종 사업장,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4,000m ³ /일 이상인 사업장	2007.8.31까지
	2,000m ³ /일 이상 4,000m ³ /일 미만인 사업장	2007.9.30까지
	1,000m ³ /일 이상 2,000m ³ /일 미만인 사업장	2007.10.31까지
	700m ³ /일 이상 1,000m ³ /일 미만인 사업장	2007.11.30까지
3종 사업장, 공동방지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500m ³ /일 이상 700m ³ /일 미만인 사업장	2008.3.31까지
	300m ³ /일 이상 500m ³ /일 미만인 사업장	2008.6.30까지
	200m ³ /일 이상 300m ³ /일 미만인 사업장	2008.9.30까지

환경부 공고 제 2006 - 72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820호, 2005. 12. 30. 공포, 2005. 7. 1. 시행)으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환경컨설팅회

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요건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 신기술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제정한 “신기술(NET)통합인증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기술(NET)통합인증령”에 따라 ‘환경신기술지정’을 ‘신기술인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업무 분담에 따라 환경분야의 기술은 환경부장관이 접수·처리하도록 함(안 제18조 내지 제19조의4).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나.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을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하고, 환경기술평가 절차 중 신기술인증신청서 접수,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은 환경기술평가 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함(안 제19조 제1항).

다.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20조제3항 신설).

라.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 분석전문기관을 정도관리 대상기관으로 설정함(안 제22조).

마. 환경친화기업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경법률 위반의 경우에도 2년간 3회 이상 위반시 환경친화기업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의7).

바.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요건을 정함(안 제22조의8 신설).

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이 변경신고 하여야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25조의2).

대통령령 제2006-72호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기술인증
2. 기술검증

제18조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소관 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항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 제8호중 “서류(환경부 소관분야의 환경기술평가에 한한다)”를 “서류”로 한다.

5. 신기술의 내용(신기술의 요지 및 기술의 신규성·우수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의 사용실적(사용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등 신청인이 기술보유자임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
7. 기술검증의 경우 검증을 받고자 하는 사항 및 현장평가방법을 기술한 서류

제18조제3항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의거 환경기술평가를 실시한 때에는 환경기술평가의 결과로 인증 또는 검증된 내용을 고시하고, 신청인에게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제5항중 “환경신기술지정은 현장조사”를 “신기술인증은 선행기술조사·현장조사”로, “환경기술검증은 현장조사”를 “기술검증은 선행기술조사·현장조사”로, “우수성”을 “신규성·우수성”으로 하고, 동조제6항 중 “제5항”을 “제2항 및 제5항”으로 하고, “현장조사”를 “선행기술조사·현장조사”로, “소관 분야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의2의 제목중 “환경신기술의 지정”을 “신기술의 인증”으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지정된 환경신기술”을 “인증된 신기술”로, “지정”을 “인증”으로 하며, 동조 제1호중 “지정”을 “인증”으로하고, 동조 제2호중 “환경신기술”을 “신기술”로 한다.

제1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라 함은 환경관리공단 또는 한국환경기술진흥원을 말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환경기술평가신청서 및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의 접수·처리, 이해관계인에 대한 의견조회 등 환경기술평가의 실시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제19조의2의 제목중 “환경신기술”을 “신기술”로 하고, “환경신기술을 지정받은 자는 환경신기술”을 “신기술인증을 받은 자는 신기술”로, “환경신기술표지”를 “신기술표시”로 한다.

제19조의3의 제목 및 동조제1항 내지 제4호중 “환경신기술”을 각각 “신기술”로 한다.

제19조의4의 제목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 등”을 “신기술의 인증기간 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은 환경신기술로 지정된”을 “신기술인증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신기술로 인증된”으로 하며, 동조 제2항중 “환경신기술”을 “신기술”로 하고, 동조 제3항중 “환경신기술”을 “신기술”로 하며, “소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하고, 동조 동항제1호 및 제2호중 “환경신기술 지정”을 “신기술인증”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제18조제4항”을 “제18조제3항”으로, “환경신기술”을 “신기술”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센터의 지정·운영에 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석전문기관, 검사기관 및 측정기관

제22조의7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3항·제39조·제40조·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이행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처분·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동조 동호 마목 중 “제18조 및 제22조”를 “제16조·제23조·제27조 및 제36조”로 하고, “등록취소처분 또는 개선명령”을 “사용중지명령·개선명령·등록취소처분 또는 허가취소처분”으로 한다.

동조 동호 사목 중 “제22조”를 “제17조”로 한다.

제22조의7제3호를 제4호로 하고, 동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후 동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기업으로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하였으나 2년간 3회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제22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8(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기준) ① 법 제19조의4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9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3. 기술인력의 변경
4. 사업목적(정관에 기재된 사업목적을 말한다)의 변경

③ 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인증기관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6항에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인증기관의 소재지
2. 인증기관의 명칭
3. 대표자 또는 심사원

제26조제2항 후단의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하여”를 “선정된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에 대한 환경성적 평가방법 및 표시에 관한”으로 한다.

제3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위임위탁)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6의 규정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변경등록, 등록취소 처분
2. 법 제34조 제3의2호의 규정에 따른 청문
3. 법 제41조제1항제5호[법 제32조제2항제1호·제4호 및 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검사대행자의 경우에는 국립환경연구원장을 말한다)의 자료제출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한한다]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환경컨설팅회사의 인력요건(제22조의8제1항관련)

구분	기술인력
1. 고급 기술인력 1인이상	(1) 환경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자 (2) 기타분야 기술사 자격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환경분야 또는 환경기술개발·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소속하여 환경분야에 관한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자 (4) 제1호 및 제3호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인정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2. 일반 기술인력 2인이상	(1) 환경분야 기사자격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취득자 (2)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환경분야 및 환경기술개발·연구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에 소속하여 환경분야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자와 동등한 경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신기술지정을 받은 기술은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증을 받은 신기술로 보며,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의 인증기간은 환경신기술 지정시의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술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4호중 “환경신기술지정서 또는 환경기술검증서”를 “신기술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로 한다.

②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라목중 “지정된 환경신기술”을 “인증된 신기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환경신기술 또는 환경기술 검증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의 신기술 또는 기술검증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비고

- 1) 기술사 또는 박사는 당해분야 기사자격 또는 석사학위 취득후 해당분야에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대체 가능
- 2) 기사는 환경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할 수 있다.
- 3)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8호 규정에 의한 환경직무분야 건설기술자는 일반 기술인력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4) 환경분야는 대기, 수질(지하수 포함), 폐기물, 상하수도, 자연환경(생태학 포함), 소음·진동, 토양보전, 환경보건, 환경정책, 환경관리 및 환경영경 등 환경과 관련이 있는 분야를 말한다.

환경부 공고 제2006-73호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7820호, 2005. 12. 30. 공포, 2006. 7. 1. 시행)으로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등록신청 절차, 관련서식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정부 신기술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제정한 “신기술(NET)통합인증요령”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환경시설의 범위를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의 범위로 변경(안 제2조)

나. “신기술(NET)통합인증요령”에 따라 ‘환경신기술 지정’을 ‘신기술인증’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업무

분담에 따라 환경분야의 기술은 환경기술평가 전문 기관에서 접수·처리하도록 함(안 제6조 내지 제6조의3).

다. 신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20일 전까지 신기술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도록 하여 신기술의 인증기간 단절을 방지하고 행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안 제6조의3).

라. 수질원격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폐수자동측정기를 부착하여야 함에 따라 형식승인 및 정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측정기기에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와 부유물질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를 추가로 규정(안 제13조제1항)

마.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절차 및 필요한 서류를 정함(안 제33조의8 및 제33조의9 신설).

바. 환경기술인력증 측정 기술요원과 방지시설 기술요원의 교육과정을 현행 교육일수의 현실에 맞추어 5일 이내로 규제 완화(안 제46조 제3항)

사. 환경성적표지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기업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제품의 특성에 따른 환경성적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도안을 변경(안 별표 5 제2호)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환경부령 제2006-73호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 및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로 하고, 동조 제4호중 “제8호·제9호”를 “제8호·제8호의2·제8호의3·제9호”로, “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을 “축산폐수처리시설·퇴비화시설·액비화시설·분뇨처리시설”로 하고, 동조 제7호중 “수도시설중 취수시설 및 정수시설”을 “수도시설”로 한다.

제6조제1항중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 소관분야에 대한”을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로, “환경부장관”을 “전문기관의 장”으로, 동조 제3항중 “환경신기술지정서”를 “신기술인증서”로, “환경기술검증서”를 “기술검증서”로 하며, 동조 제4항중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이하 “환경관리공단”이라 한다)이사장”을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고, 동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중 “환경관리공단”을 “전문기관”으로, “환경기술검증”을 “기술검증”으로, 동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조 동항 제1호중 “환경신기술지정서”를 각각 “신기술인증서”로, “환경기술검증서”를 각각 “기술검증서”로 한다.

제6조의2의 제목 및 본문중 “환경신기술표지”를 각각 “신기술표시”로 한다.

제6조의3의 제목중 “환경신기술”을 “신기술”로 하고, 동조제1항중 “환경부 소관 분야에 대한 환경신기술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을 “신기술의 유효

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120일 전까지”로, “환경신기술”을 “신기술”로, 동조 제2항 중 “환경신기술”을 “신기술”로, “환경관리공단”을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에 사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 아.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

제33조의8 및 제33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8(환경컨설팅회사 등록 신청 등) ① 법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정관
 3. 전문인력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②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을 한 자가 법 제19조의4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2호의5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환경컨설팅회사등록증을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의6서식의 환경컨설팅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3조의9(환경컨설팅회사 등록 등의 공고) 유역 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컨설팅회사를 등록하거나 법 제19조의 6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신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6조를 삭제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증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를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동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법 제2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교부하는 환경성적표지 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기관이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환경성적 표지 인증기관 지정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환경성적표지 인증기

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재료 및 제품(이하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이라 한다)의 선정을 제안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선정제안서에 설명서 및 선정제안 사유서를 첨부하여 영 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업무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제1항1호 “국립환경연구원”을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하고, 동조 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측정 기술요원과정 : 5일 이내
2. 방지시설 기술요원과정 : 5일 이내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 제1호라목(6) “(1) 내지 (6)의 시설”을 “(1) 내지 (8)의 시설”로 하고, 동 별표 제2호다목에 (7) 및 (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3인, 기능직 2인	(1) 기준장비(pH기준장비) 1대 (2) ~ (16)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같음
(8)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3인, 기능직 2인	(1) 기준장비(SS기준장비) 1대 (2) ~ (16)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와 같음

별표 5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환경법개정법률안 모음

라.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1)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2호	지정취소			
(2)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법 제22조 제3호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3) 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 및 절차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 제22조 제4호	지정취소			
(가) 인증기준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나) 인증절차에 위반하여 인증업무를 수행한 경우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4) 법 제2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 지정 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제3의2호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가) 인증기관의 소재지·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나) 심사원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변경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5)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6)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증기관이 인증한 제품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22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7) 법 제2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2조 제1호	지정취소			
(8)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	경고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중 “환경신기술지정”을 “신기술인증”으로 하고, “환경기술검증”을 “기술검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호의5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2조의6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중인 환경측정기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측정기기중 사용중인 기기는 이 규칙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며,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는 환경측정기기에 대하여 정도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일을 해당기기의 취득일로 본다.

제3조(검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행자로 지정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개정 규정에 적합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사대행자지정서를 변경 발급·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검사대행자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검사대행자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환경부 훈령 제653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545호, 2002. 12. 24)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6. 3. 1.

환경부장관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 ◆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을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으로 한다.

제1조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분류·보관·수거”를 “분류·보관·수거·운반”으로, “분리수거량 조사 및 보고”를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조사·보고·공표”로 한다.

제9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태 점검시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재활용사업공체조합을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민간단체 관계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의 제목중 “조사·보고”를 “조사·보고·공표”으로 하고, 동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발생량 및 분리수거량 등을 매년 4월말까지 신문·방송·인터넷 매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